

의안번호	제 938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1년 12월 15일

#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8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15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2.1.13.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사항으로 검직신고 및 검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검직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위반시 윤리심사 등(안 제4조)
  - 검직하는 것이 품위 유지에 위반되어 사임권고시 거부한 경우
  - 자치단체가 출연·출자·위탁·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의 검직 금지 관련 사임권고 거부시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허위 발견의 경우
- 검직신고 내용 명확화 및 검증절차 강화, 내역 공개 사항(안 제5조)
  - 검직하는 직무의 수행업무내역, 해당 분야, 영리성 여부 등 세분화된 신고서 도입
  - 검직신고 내역 확인 및 검증 절차 명시
  - 검직신고 내역 공개 및 검직신고 연 1회 이상 안내

## 3. 조례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해당없음
- 관련부서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의회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심의하고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한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의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된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검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도의회가 제1항에 따라 검직신고를 하면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등과 검직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검직 기관·단체에서 수행업무, 영리성, 보수 수령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검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도의원의 성실한 검직신고 이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검직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윤리심사 등) 도의원이 이 조</u> <u>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u> <u>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되,</u> <u>그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u> <u>준용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u>제4조(윤리심사 등) 도의원이 이 조</u> <u>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u> <u>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심의하고</u> <u>징계 등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u> <u>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u> <u>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u></li> <li>2.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의 <u>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u> <u>부한 경우</u></li> <li>3. <u>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u> <u>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u> <u>견된 경우</u></li> </ol>
<p><u>제5조(검직신고) ① 도의원이 「지</u> <u>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u> <u>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u> <u>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u> <u>다.</u></p> <p>② (생 략)</p>	<p><u>제5조(검직신고) ① 도의원이 「지</u> <u>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u> <u>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u> <u>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u> <u>검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u> <u>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u> <u>호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도의회이 제1항에 따라 검직신고를 하면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등과 검직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검직 기관·단체에서 수행업무, 영리성, 보수 수령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검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도의원의 성실한 검직신고 이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검직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 례 대 표	
	한 자		생 년 월 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인)

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